

	하도급 4대 실천사항	문서번호 : HT-Q-I-42-09
	바람직한 계약체결	제정일자 : 2009. 6. 1.
		개정일자 : 2023. 06. 01. / 개정차수 : 11

## 목 차

1. 목적
2. 업체선정방식
3. 계약체결 인프라
4. 계약체결시 준수사항
5. 계약체결시 금지사항
6. 계약이행시 준수사항
7. 계약이행시 금지사항

	<b>하도급 4대 실천사항</b>	문서번호 : HT-Q-I-42-09
	<b>바람직한 계약체결</b>	제정일자 : 2009. 6. 1.
		개정일자 : 2023. 06. 01. / 개정차수 : 11

## 1. 목적

이 실천사항은 당사와 거래 협력회사 간의 계약체결에 있어 상호 준수해야 할 내용을 제시함으로써 국가의 개입은 최소화하면서도 합리적이고 공정한 거래관행을 구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 2. 업체선정방식

당사의 협력회사 POOL에 등록된 업체는 신규부품 개발시 품목별로 입찰을 통해 개발업체로 선정되어야 당사와 거래를 개시하게 되며 업체선정방식에는 아래의 3가지가 있다.

### 2-1. 공개입찰(지명경쟁계약)

지명경쟁계약의 형태로 온/오프라인 상에서 입찰 참여 업체를 대상으로 견적요청서(RFQ) 송부 및 견적서를 접수하여 최저가 견적 제출업체를 선정하는 것

※ RFQ : Request for Quotation, 견적요청서

### 2-2. 심의입찰(제한경쟁계약)

제한경쟁계약의 형태로 업체선정 심의위원회를 통해 입찰 대상업체의 가격, 품질, 납입, 기술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업체를 선정하는 것

### 2-3. 전략구매(수의계약)

수의계약의 형태로 경쟁입찰 이외의 방식으로 기술, 품질능력 우수, 단독·신기술부품, 기타 정책에 의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품목에 대해 전문업체를 선정하는 것

## 3. 계약체결 인프라

### 3-1. PRM(Partner Relationship Management)

3-1-1. 당사는 거래 협력업체와의 정보공유 및 상생협력을 위하여 PARTNER 시스템 및 동반성장포털을 운영하고 있으며 거래를 희망하는 신규업체를 위하여 홈페이지 및 동반성장포털에 업체등록절차를 공지하고, 동반성장포털에 신규 협력업체 제안 채널을 운용한다.

3-1-2. 당사는 거래 협력업체간의 정보교류 및 지원정책 수립을 위한 정기 협력업체 간담회를 운영한다.

### 3-2. 중소기업 지원조직 운영

협력업체에 대한 품질·기술지원, 자금지원, 교육, 제안제도 등을 담당하는 전담지원조직(상생협력팀)을 운영한다.

## 4. 계약체결시 준수사항

### 4-1. 서면의 사전발급

4-1-1. 구매업체와 공급업체는 사전에 계약서를 체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최소한 납품 등을 위한 작업에 착수하기 전에 기명날인이 있는 계약서를 체결하여야 한다.

4-1-2. 계약서에는 하도급대금과 그 지급방법 등 하도급계약의 내용과 원자재 가격변동에 따른 하도급대금의 조정요건, 방법 및 절차 등 하도급법 및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내용을 반드시 포함하여야 한다.

	<b>하도급 4대 실천사항</b>	문서번호 : HT-Q-I-42-09
	<b>바람직한 계약체결</b>	제정일자 : 2009. 6. 1.
		개정일자 : 2023. 06. 01. / 개정차수 : 11

- 4-1-3. 납품이 빈번한 거래인 경우에는 기본계약서를 먼저 체결하고 일정기간 동안의 각각의 납품에 대해서 구매업체가 교부한 발주서(전산발주서/정산서 포함)를 개별계약으로 갈음한다.
- 4-1-4. 경미하고 빈번한 추가 작업으로 인해 물량변동이 명백히 예상되는 경우에는 납품 등의 완료 후 즉시 정산합의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 4-1-5. 통상 허용되는 기간보다 현저히 짧은 기간내에 추가로 요구할 경우에는 주요 내용에 대해 사전에 서면으로 합의하여야 한다.

#### 4-2. 합리적인 산정방식에 의한 단가결정

- 4-2-1. 부품의 단가는 수량·품질·사양·납기·대금지급방법·재료가격·노무비 또는 시가의 동향 등을 고려하고 적정한 관리비 및 이익을 가산한 합리적인 산정방식에 따라 협의하여 결정한다.
- 4-2-2. 상기 4-2-1항에서 정한 단가에는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상호 협의하여 정하는 납품장소까지의 포장비, 운임, 하역비 및 보험료 등 기타 일체의 비용을 포함한다.
- 4-2-3. 계약기간 중 4-2-1항에서 정한 단가에 변경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상대방에게 단가조정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신청일로부터 30일(30일 연장 가능) 이내에 상호 협의하여 조정한다. 30일 안에 조정에 관한 합의에 도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구매업체 또는 공급업체는 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 4-2-4. 단가결정이 특별한 사유로 인하여 지연되는 경우에는 협의하여 정한 임시단가를 적용하되, 이 경우 임시단가와 확정단가의 차액은 확정단가를 정하는 때에 소급하여 정산한다.
- 4-2-5. 구매업체는 원가산정에 있어 기준이 되는 임률을 정기적으로 조사하여 현실에 맞는 단가를 제시하되, 동종업계의 인건비를 고려하여 작업여건, 거래업체 규모, 기술수준 등 업체별 특성에 따라 임률을 책정하여야 한다.
- 4-2-6. 최초 정해진 단가가 변경될 때 당사자간 협의할 수 있는 기준 및 절차를 계약서에 규정하여야 한다.
- 4-2-7. 단가변경의 사유(물가, 원자재가격, 환율변화 등), 협의기간, 대금지급조건 등 구체적인 내용을 적시해야 한다.

#### 4-3. 납기와 납품

- 4-3-1. 구매업체는 업종별 특성을 고려하여 정상적인 관행에 적합한 납기를 공급업체와 충분한 협의를 거쳐 결정한다.
- 4-3-2. 납기란 개별계약(발주서)에 의하여 발주부품을 구매업체와 공급업체가 협의하여 정하는 장소에 납품할 기일을 말하며, 개별계약(발주서)마다 상호 협의하여 정한다.
- 4-3-3. 계약체결시 납기를 정하고 납기를 변경할 경우 이를 명확히 하여야 하며, 긴급발주 등의 명목으로 평소보다 짧은 납기를 정할 경우에는 공급업체와 협의를 거쳐 합의해야 한다.
- 4-3-4. 구매업체는 공급업체에게 책임을 돌릴 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부당한 수령지연 또는 거부로 인해 공급업체가 손해를 입은 경우에는 이를 배상하여야 한다.

#### 4-4. 객관적 검사기준

- 4-4-1. 구매업체는 목적물 등에 대한 검사에 있어 공급업체와 협의하여 객관적이고 공정·타당한 검사의 기준 및 방법을 정한다.
- 4-4-2. 구매업체는 납품 등이 있는 때에는 검사전이라도 즉시 수령증을 교부하여야 하며, 검사는 미리 정한 검사규정 및 절차에 따라 신속히 실시하여야 한다.

	<b>하도급 4대 실천사항</b>	문서번호 : HT-Q-I-42-09
	<b>바람직한 계약체결</b>	제정일자 : 2009. 6. 1. 개정일자 : 2023. 06. 01. / 개정차수 : 11

4-4-3. 구매업체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급업체로부터 목적물을 수령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검사결과를 통지하여야 한다.

4-4-4. 구매업체는 검사 전 또는 검사기간 중의 발주부품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를 가지고 관리하여야 한다.

#### 4-5. 대금의 지급

4-5-1. 공급업체에게 제조등의 위탁을 하는 경우에는 목적물 등의 수령일(납품 등이 빈번하여 구매업체와 공급업체가 월 1회 이상 세금계산서의 발행일을 정한 경우에는 그 정한 날을 말한다. 이하 같다)부터 60일 이내의 가능한 짧은 기한으로 정한 지급기일까지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4-5-2. 구매업체는 공급업체에게 제조등의 위탁을 한 경우로서 발주자로부터 제조, 수리 또는 용역수행행위의 완료에 따라 준공금 등을 받은 때에는 대금을 지급받은 날로부터 15일(대금의 지급기일이 그 전에 도래하는 경우에는 그 지급기일) 이내에 공급업체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4-5-3. 구매업체는 공급업체에게 제조등의 위탁을 한 경우로서 발주자로부터 제조, 수리 또는 용역수행 행위의 진척에 따라 기성금 등을 받은 때에는 공급업체가 제조, 수리 또는 용역수행한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지급받은 날부터 15일(대금의 지급기일이 그 전에 도래하는 경우에는 그 지급기일) 이내에 공급업체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4-5-4. 구매업체가 공급업체에게 하도급대금을 지급할 때에는 발주자로부터 해당 제조 등의 위탁과 관련하여 지급받은 현금비율 이상으로 지급해야 한다.

4-5-5. 구매업체가 공급업체에게 하도급대금을 어음으로 지급할 때에는 당해 제조 등의 위탁과 관련하여 발주자로부터 교부받은 어음의 지급기간(발행일로부터 만기일까지)내의 어음을 교부하여야 한다.

4-5-6. 구매업체가 공급업체에게 하도급대금을 어음으로 지급할 때에 그 어음은 법률에 근거하여 설립된 금융기관에서 할인이 가능한 것이어야 하며, 어음을 교부한 날로부터 어음의 만기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할인료(공정위가 정하여 고시하는 할인율)를 어음을 교부하는 날에 지급하여야 한다.

4-5-7. 구매업체가 공급업체에게 목적물 등의 수령일부터 60일 이내에 어음을 교부하는 경우에는 납품물 등의 수령일로부터 60일을 초과한 날 이후 만기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할인료를 목적물 등의 수령일 부터 60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한다.

4-5-8. 구매업체는 하도급대금을 어음대체결제수단을 이용하여 지급하는 경우에는 지급일(기업구매전용카드의 경우는 카드결제 승인일, 외상매출채권 담보대출의 경우는 납품등의 명세 전송일, 구매론의 경우는 구매자금 결제일을 말한다. 이하 같다)부터 하도급대금 상환기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수수료(대출이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지급일에 공급업체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목적물 등의 수령일부터 60일 이내에 어음대체결제수단을 이용하여 지급하는 경우에는 목적물등의 수령일부터 60일이 지난 날 이후부터 하도급대금 상환기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수수료를 목적물 등의 수령일부터 60일 이내에 공급업체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4-5-9. 구매업체가 하도급대금을 목적물 등의 수령일부터 60일이 지난 후에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기간에 대하여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비율에 따른 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

4-5-10. 4-5-8항에서 적용하는 수수료율은 구매업체가 금융기관과 체결한 어음대체결제수단의 약정상 수수료율로 한다

#### 4-6. 납품 등 이후 발견되는 하자에 대한 합리적인 반품 처리

납품 등 이후 발견되는 하자에 대해서는 하자원인 규명 주체, 하자원인의 종류, 그에 따른 책임부담비율 등을 규정하여 구매업체와 공급업체의 합의에 의하여 반품 처리한다.

#### 4-7. 계약의 해제·해지

4-7-1. 계약의 해제·해지 사유는 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해 정하고 '최고 없이 가능한 경우'와 '최고가 필요한 경우'를 구분하되 해제·해지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서면으로 지체없이 통보한다.

4-7-2. 최고 없이 가능한 경우는 다음과 같다.

- ① 상대방이 금융기관으로부터 거래정지처분을 받거나, 감독관청으로부터 영업취소·영업정지 등의 처분을 받은 경우

	<b>하도급 4대 실천사항</b>	문서번호 : HT-Q-I-42-09
	<b>바람직한 계약체결</b>	제정일자 : 2009. 6. 1.
		개정일자 : 2023. 06. 01. / 개정차수 : 11

- ② 상대방이 부도, 제3자에 의한 강제집행, 파산, 화의개시 및 회사정리절차의 신청 등 영업상의 중대한 사유가 발생하여 계약내용을 이행할 수 없다고 인정될 경우
- ③ 상대방이 해산, 영업의 양도 또는 타 회사로의 합병을 결의하거나, 재해 기타 사유로 인하여 기본계약 또는 개별계약의 내용을 이행하기 곤란하다고 쌍방이 인정한 경우

4-7-3. 최고가 필요한 경우는 다음과 같으며, 이 경우에는 상대방에게 1개월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그 이행을 최고하고, 그 기간내에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 계약을 해제·해지할 수 있다.

- ① 상대방이 본 계약 또는 개별계약의 중요한 내용을 위반한 경우
- ② 구매업체가 정당한 사유없이 발주부품의 제작에 필요한 사항의 이행을 지연하여 공급업체의 작업에 지장을 초래한 경우
- ③ 공급업체가 정당한 사유없이 발주부품의 제작을 거부하거나 착수를 지연하여 납기내에 납품 등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④ 공급업체의 기술·생산 및 품질관리능력이 부족하여 계약내용을 원만히 이행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 5. 계약체결시 금지사항

### 5-1. 서면 미교부 또는 보존하지 않는 행위

- 5-1-1. 정당한 사유없이 위탁시점에 확정하기 곤란한 사항에 대하여 해당사항을 기재하지 아니한 서면을 발급하면서 해당사항이 정하여지지 아니한 이유, 그 사항을 정하게 되는 예정기일을 기재하지 않고 발급하는 행위
- 5-1-2. 일부사항을 기재하지 아니한 서면을 발급한 이후 해당사항이 확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공급업체에게 새로운 서면을 지연 발급하거나 발급하지 않는 행위
- 5-1-3. 구두위탁(발주)한 내용에 대해 공급업체로부터 위탁한 작업의 내용, 하도급대금, 위탁일시 등 위탁내용의 요청받고도 15일 이내에 인정 또는 부인의 의사를 서면으로 회신하지 않는 행위
- 5-1-4. 구두위탁(발주)한 내용에 대해 위탁내용의 인정 또는 부인의 의사를 회신하면서 구매업체(회사 계약책임자)의 서명 또는 기명날인을 하지 않는 행위
- 5-1-5. 추가작업의 범위가 구분되고 금액이 상당함에도 이에 대한 구체적인 추가계약서나 작업지시서 등을 발급하지 아니한 행위
- 5-1-6. 법정서류를 3년간 보존하지 아니하고 임의적으로 3년 이내 폐기하거나 거래종료일부터 3년간 서면(서류)를 보존하고 있으나 허위 서면(서류)이거나 허위내용의 서류를 사후 작성하여 보존하는 행위
- 5-1-7. 입찰내역서, 낙찰자 결정품의서, 견적서 등 하도급대금 결정과 관련된 서류를 보존하지 않는 행위

### 5-2.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행위

- 5-2-1. 정당한 이유없이 일률적인 비율로 단가를 인하여 하도급대금을 결정하는 행위
- 5-2-2. 협조요청 등 명목여하를 불문하고 일방적으로 일정금액을 할당한 후 당해 금액을 감하여 하도급대금을 결정하는 행위
- 5-2-3. 정당한 이유없이 특정 공급업체를 차별취급하여 대금을 결정하거나, 공급업체와 합의없이 일방적으로 낮은 단가에 의하여 대금을 결정하는 행위

	<b>하도급 4대 실천사항</b>	문서번호 : HT-Q-I-42-09
	<b>바람직한 계약체결</b>	제정일자 : 2009. 6. 1.
		개정일자 : 2023. 06. 01. / 개정차수 : 11

- 5-2-4. 발주량 등 거래조건에 대하여 착오를 일으키게 하거나 다른 사업자의 견적 또는 거짓견적을 내보이는 등의 방법으로 공급업체를 기만하고 이를 이용하여 대금을 결정하는 행위
- 5-2-5. 수의계약으로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정당한 사유 없이 직접공사비 항목의 값을 합한 금액보다 낮은 금액으로 대금을 결정하는 행위
- 5-2-6. 경쟁입찰에 의하여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정당한 사유없이 최저가로 입찰한 금액보다 낮은 금액으로 대금을 결정하는 행위
- 5-2-7. 자재의 가격하락 및 노임하락 등 객관적으로 타당한 단가인하 사유가 없이 일률적으로 단가를 인하하여 대금을 결정하는 행위
- 5-2-8. 대금지급조건, 거래수량, 작업의 난이도 등의 차이가 없음에도 특정거래업체를 차별 취급하여 대금을 낮게 결정하는 행위
- 5-2-9. 다량 발주를 전제로 하여 견적하도록 한 후, 실제로는 소량 발주하면서 그 견적가격을 기준으로 대금을 결정하는 행위
- 5-2-10. 대금을 정하지 않은 채 제조 등의 위탁을 한 후, 공급업체와의 협의를 거치지 않고 통상 지급되는 대가를 하회하여 대금을 결정하는 행위
- 5-2-11. 납품관련 기술자료 등을 요구하여 넘겨받은 후, 이를 다른 사업자에게 제공하고 다른 사업자의 견적가격 등을 근거로 대금을 인하하는 행위
- 5-2-12. 수출, 할인특별판매, 경품류, 견본용 등을 이유로 통상 지급되는 대가보다 현저하게 하회하여 대금을 결정하는 행위

### 5-3. 구두에 의한 제안서 제시 요구 혹은 개발의뢰 행위

설비완료 혹은 생산준비 완료 후 개발을 취소하거나 구두로 요구시 제시한 단가를 인하할 것을 요구하는 행위

### 5-4. 부당한 경영간섭 행위

- 5-4-1. 공급업체가 임직원을 선·해임함에 있어 자기의 지시 또는 승인을 얻게 하거나 공급업체의 의사에 반하여 특정인을 채용하게 하는 등의 방법으로 인사에 간섭하는 행위
- 5-4-2. 재하도급거래에 개입하여 자신의 위탁한 목적물 등의 품질유지 및 납기내 납품여부 등 하도급거래의 목적과 관계없이 선정·계약조건설정 등 재하도급거래내용을 제한하는 행위
- 5-4-3. 공급업체의 생산품목·시설규모 등을 제한하거나 공급업체로 하여금 자신 또는 자신의 계열회사의 경쟁사업자와 거래하지 못하도록 하는 행위
- 5-4-4. 공급업체에게 납품관련 기술자료 등을 정당한 이유없이 요구하여 제공하도록 하는 행위
- 5-4-5. 경품부판매, 할인특매 등의 특별판매행사에 거래업체가 참여토록 강요하거나, 상품이나 상품권 등의 구입을 강요하는 행위

### 5-5. 설계변경 등에 따른 하도급대금의 미조정 행위

- 5-5-1. 발주자로부터 설계변경 또는 경제상황의 변동 등을 이유로 추가금액을 수령하고도 이를 지급하지 아니하거나

HYUNDAI TRANSYS	하도급 4대 실천사항	문서번호 : HT-Q-I-42-09
	바람직한 계약체결	제정일자 : 2009. 6. 1.
		개정일자 : 2023. 06. 01. / 개정차수 : 11

또는 받은 비율이나 내용보다 적게 지급하는 행위

- 5-5-2. 발주자로부터 설계변경 또는 경제상황의 변동 등을 이유로 계약금액을 조정 받고도 30일을 초과하는 날까지 중액 또는 감액하지 아니하거나 30일을 초과하여 조정하는 행위
- 5-5-3. 발주자로부터 설계변경 또는 경제상황의 변동 등을 이유로 추가금액을 수령한 날부터 15일이 지난 후에 대금을 현금 또는 어음이나 어음대체결제수단을 이용하여 지급하면서 그 초과기간에 대한 지연이자, 어음할인료, 수수료를 지급하지 않는 행위
- 5-5-4. 설계변경 또는 경제상황의 변동 등의 사유로 발주자로부터 계약금액을 중액 또는 감액 받고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증감받은 사유와 내용을 공급업체에게 통지(발주자 직접 통지한 경우 제외)하지 않는 행위
- 5-6. 공급원가(원재료 가격) 등의 변동에 따른 하도급대금의 미조정 행위
  - 5-6-1. 협의신청에 응답하지 않거나 협의를 개시하겠다고 통보한 후 회의개최, 의견교환, 단가조정안 제시 등 실질적인 협의절차를 진행하지 않는 행위
  - 5-6-2. 협의를 신청한 후 30일이 경과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인 단가조정 권한을 가지고 있는 책임자가 협의에 임하지 않는 행위
  - 5-6-3. 단가조정을 위한 시장조사, 원가산정 등 객관적 근거 없이 상대방이 수용할 수 없는 가격을 되풀이하여 제시하는 행위
- 5-7. 전속적 거래 요구 행위
  - 공급업체로 하여금 자신 및 자신이 지정하는 업체와는 거래하지 못하게 하는 행위  
(기술개발을 공급업체와 공동으로 하는 것을 이유로 공급업체와 전속적 거래에 합의하는 경우를 제외)
- 5-8. 부당특약 행위
  - 5-8-1. 공급업체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거나 제한하는 계약조건을 설정하는 행위
  - 5-8-2. 계약에 기재되지 아니한 사항을 요구함에 따라 발생된 비용을 공급업체에게 부담시키는 약정을 설정하는 행위
  - 5-8-3. 구매업체가 부담하여야 할 민원처리, 산업재해 등과 관련된 비용을 공급업체에게 부담시키는 약정을 설정하는 행위
  - 5-8-4. 입찰내역에 없는 사항을 요구함에 따라 발생된 비용을 공급업체에게 부담시키는 약정을 설정하는 행위

## 6. 계약이행시 준수사항

- 6-1. 민법 등 관련 법령의 준수
  - 신의성실의 원칙, 하도급법, 공정거래법 등 관련 법령을 준수하되 분쟁 발생시 서면 자료에 의해서 해결하여야 한다.
- 6-2. 단가 인하시 사전 충분한 합의 및 서면발급
  - 원자재 가격하락, 물량 증대 등을 이유로 한 단가인하의 경우 물량 증대에 따른 단가인하폭에 대한 합리적인 근거를 제시한다.
- 6-3. 설계변경 등 계약변경으로 인해 추가비용 소요될 경우 그에 따른 대금을 조정하여야 한다.
- 6-4. 계약서에 규정된 내용에 따라 계약을 해제·해지하되 계약 해제·해지 이유에 해당하지 않는 거래정지는 가급적이면 2~3개월 이전의 빠른 시일 내에 공급업체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 7. 계약이행시 금지사항

- 7-1. 부당한 수령거부 행위
  - 7-1-1. 위탁내용이 불명확하여 납품물 등의 내용의 위탁내용과 상이한지 판단이 곤란함에도 불구하고 수령을 거부하는 행위

	<b>하도급 4대 실천사항</b>	문서번호 : HT-Q-I-42-09
	<b>바람직한 계약체결</b>	제정일자 : 2009. 6. 1.
		개정일자 : 2023. 06. 01. / 개정차수 : 11

- 7-1-2. 발주자 · 외국수입업자 · 고객의 클레임 · 판매부진 등을 이유로 이미 위탁한 물품의 수령을 거부하는 행위
- 7-1-3. 공급하기로 되어 있는 원자재 등을 늦게 공급함으로써 납기내 납품이 불가능함에도 납기지연을 이유로 수령을 거부하는 행위
- 7-1-4. 검사기준을 정하지 아니하고 통상의 기준보다 높은 기준을 적용하는 행위
- 7-1-5. 검사기준을 정하였다고 하더라도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당초계약에서 정한 검사기준보다 높은 기준을 적용하여 수령을 거부하는 행위
- 7-1-6. 공급업체로부터 납품 등의 수령요구가 있었음에도 보관장소 부족 등 정당한 사유없이 수령을 거부하는 행위
- 7-1-7. 공급업체의 부도 등에 따라 안정적인 공급이 어렵다고 판단해서 이미 발주한 물품의 수령을 임의로 거부하는 행위
- 7-1-8. 여러 품목을 제조위탁하고 일부품목의 불량률을 이유로 다른 품목에 대하여도 수령을 거부하거나, 발주자의 발주취소 또는 발주중단 등을 이유로 수령을 거부하는 행위

#### 7-2. 부당 반품 행위

- 7-2-1. 발주자로부터의 발주취소, 발주중단 또는 경제상황의 변동 등의 이유로 반품하는 행위
- 7-2-2. 검사의 기준 또는 방법을 불명확하게 정함으로써 부당하게 불합격으로 판정하여 이를 반품하는 행위
- 7-2-3. 공급한 원재료의 품질불량으로 인하여 불합격품으로 판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반품하는 행위
- 7-2-4. 원재료 공급지연에 의한 납기지연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이유로 반품하는 행위
- 7-2-5. 이미 수령한 물품을 발주자 · 외국수입업자 · 고객의 클레임 · 판매부진 등을 이유로 반품하는 행위
- 7-2-6. 공급업체가 납기지연이 있었으나 이를 용인한 객관적 사실이 있음에도 이를 수령한 후 납기지연을 이유로 반품하는 행위
- 7-2-7. 공급업체 이외의 제3자에게 검사를 위탁한 경우로서 공급업체가 공신력있는 제3자의 검사를 필요로 납품하였음에도 이를 반품하는 행위

#### 7-3. 부당한 대금 감액 행위

- 7-3-1. 위탁할 때 대금을 감액할 조건 등을 명시하지 아니하고 위탁 후 협조요청 또는 거래상대방으로부터의 발주취소, 경제상황의 변동 등 불합리한 이유를 들어 대금을 감액하는 행위
- 7-3-2. 단가인하에 관한 합의가 성립한 경우 당해 합의 성립전에 위탁한 부분에 대하여도 일방적으로 이를 소급적용하여 대금을 감액하는 행위
- 7-3-3. 대금을 현금으로 또는 지급기일전에 지급함을 이유로 과다하게 대금을 감액하는 행위
- 7-3-4. 손해발생에 실질적 영향을 미치지 않는 공급업체의 경미한 과오를 이유로 일방적으로 대금을 감액하는 행위
- 7-3-5. 제조 · 수리 · 시공 또는 용역수행에 필요한 물품 등을 자기로부터 사게 하거나 자기의 장비 등을 사용하게 한 경우에 적절한 구매대금 또는 사용대가 이상의 금액을 대금에서 공제하는 행위
- 7-3-6. 대금 지급시점의 물가나 자재가격 등이 납품 등의 시점에 비하여 떨어진 것을 이유로 대금을 감액하는 행위
- 7-3-7. 경영적자 또는 판매가격 인하 등 불합리한 이유로 부당하게 대금을 감액하는 행위
- 7-3-8. 당초 계약내용과 다르게 간접노무비, 일반관리비, 이윤, 부가가치세 등을 감액하는 행위
- 7-3-9.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등에 관한 법률, 산업안전보건법 등에 따라 구매업체가 부담하여야 하는 고용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의 경비를 공급업체에게 부담시키는 행위
- 7-3-10. 자재 및 장비 등을 공급하기로 한 경우 이를 지연하여 공급하거나 사실상 무리한 납기를 정해 놓고 이 기간 내에 납품 못함을 이유로 감액하는 행위

	<b>하도급 4대 실천사항</b>	문서번호 : HT-Q-I-42-09
	<b>바람직한 계약체결</b>	제정일자 : 2009. 6. 1.
		개정일자 : 2023. 06. 01. / 개정차수 : 11

7-3-11. 계속적 발주를 이유로 이미 확정된 하도급대금을 감액하거나, 총액으로 계약한 후 제조의 구체적 내역을 이유로 감액하는 행위

7-3-12. 납품물 등을 저가로 수주하였다는 등의 이유로 당초계약과 다르게 대금을 감액하는 행위

7-3-13. 위탁내용 및 조건에는 변함이 없음에도 계약을 변경하는 등 결과적으로 대금을 감액하는 행위

7-3-14. 환차손 등을 공급업체에게 당초 계약조건과 다르게 전가시켜 대금을 감액하는 행위

#### 7-4. 경제적 이익의 부당요구 행위

7-4-1. 거래 개시 또는 다량거래 등을 조건으로 협찬금, 장려금, 지원금 등 경제적 이익을 요구하는 행위

7-4-2. 수익 또는 경영여건 악화 등 불합리한 이유로 협찬금, 장려금, 지원금 등 경제적 이익을 요구하는 행위

7-4-3. 기타 공급업체가 법률상 부담할 의무가 없음에도 협찬금, 장려금, 지원금 등 경제적 이익을 요구하는 행위

#### 7-5. 구매업체의 원인(임금상승, 내부적인 품의절차 지연)에 기인한 비용을 공급업체에게 전가하는 행위

#### 7-6. 부당한 대물변제 행위

최초 계약과는 달리 공급업체의 의사에 반하여 정해진 대금을 물품으로 지급하고 이를 받아들일 것을 요구하는 행위

#### 7-7. 보복 조치 행위

공급업체가 공정위에 하도급법 위반으로 신고한 것을 이유로 수주기회 제한 또는 거래의 정지 기타 불이익을 주는 행위

#### 7-8. 탈법 행위

7-8-1. 하도급거래와 관련하여 우회적인 방법에 의하여 실질적으로 하도급법의 적용을 면탈하려는 행위

7-8-2. 공정위의 시정조치에 따라 대금 등을 공급업체에 지급한 후 이를 회수하거나 납품대금에서 공제하는 등의 방법으로 환수하는 행위

7-8-3. 어음할인료·지연이자 등을 공급업체에 지급한 후 이에 상응하는 금액만큼 일률적으로 단가를 인하하는 행위

#### 7-9. 물품등의 구매강제 행위

7-9-1. 정당한 사유없이 자사, 계열사 또는 특정회사 등의 제품이나 서비스 등을 공급업체에게 강매하거나 이용하게 하는 행위

7-9-2. 정당한 사유없이 공급업체가 구매 의사가 없다고 표시하였거나, 의사표시가 없어도 명확히 구매의사가 없다고 인정됨에도 재차 구매를 요청하는 행위

#### 7-10. 물품구매대금 등의 부당결제청구 행위

7-10-1. 공급업체에게 납품 등에 필요한 물품 등을 자기로부터 사게 하거나 자기 장비 등을 사용하게 하고, 대금 지급기일에 앞서 구매대금이나 사용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게 하는 행위

7-10-2. 공급업체에게 납품 등에 필요한 물품 등을 자기로부터 사게 하거나 자기 장비 등을 사용하게 하고, 자기가 구입·사용 또는 제3자에게 공급하는 조건보다 현저하게 불리한 조건으로 지급하는 행위

	<b>하도급 4대 실천사항</b>	문서번호 : HT-Q-I-42-09
	<b>바람직한 계약체결</b>	제정일자 : 2009. 6. 1.
		개정일자 : 2023. 06. 01. / 개정차수 : 11

7-11. 기술자료 제공 강요금지 행위

7-11-1. 정당한 사유없이 공급업체에게 다음 기술자료를 자기 또는 제3자에게 제공하도록 강요하는 행위

- ① 상당한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관리되는 제조·수리·용역수행 방법에 관한 자료
- ②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저작권 등의 지식재산권과 관련된 정보
- ③ 제품개발 등을 위한 연구자료, 연구개발보고서 등 공급업체의 생산·영업활동에 기술적으로 유용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가 있는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

7-11-2. 공급업체로부터 취득한 기술자료를 자기 또는 제3자를 위해 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는 행위